

제 1333 호

1986. 12. 18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편집인 : 공보관 김갑승  
전화 : 731-6117-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제	번호	발행	일자	공보관	공람
1333			1986.12.18	김갑승	공람

# 시보

## 차 례

- ① 조 례
  - 제 2125 호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홍사실치조배증개정조례 ..... 2
  - 제 2126 호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배증개정조례 ..... 2
  - 제 2127 호 :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  
과세에관한조례 ..... 9
- ② 훈 령
  - 제 643 호 : 서울특별시위임전권규정증개정규정 ..... 11
- ③ 구 고 시
  - 서대문구제 51 호 : 특전열사용기자재시공지정업체지정취소 ..... 13
- ④ 사 령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125 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중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공사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 제 2항중 “농수산부 농업정책  
국장”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장”  
을 “농수산부와 서울특별시의 농수  
산물 도매시장 업무를 주관하는 국

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들이  
에 공포한다.

1986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126 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보관 “제 1호”를 올림찍준비  
단 “제 8호”로 하고 국별 “공보관”  
을 삭제한다.

별표 내무국중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내무국	4. 새마을유아원 설립, 경영 폐지 및 인가	· 유아교육진흥법 제 8조 및 제 9조 · 동법시행령 제 5조	구청장
별표 보건사회국중 “제 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41. 허위허위행위 금지의 적 용이 제외되는 상례의 승 인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규정 제 42조 제 7항에 제 22 호	구청장

별표 산업경제육성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별	사 유 명	근 거 법 령	수 립 기 관
산 업 경 제 국	6.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및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아래의 업무, 다만 자가용 전기공작물중 경시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가발전설비(일병합발전포함)에 관한 업무 제외 가.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공작물 공사계획(변경) 신고 나. 자가용 전기공작물 사용 개시 신고 다. 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 담당자 검입 승인 신청 라. 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신청 마.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장수 바. 자가용 및 일반용 전기공작물 입회경사	• 전기사업법 제 31 조 및 제 48 조 • 동법시행령 제 22 조 제 1 항 제 12 호 및 제 16 호 • 전기사업법 제 50 조 • 동법시행령 제 22 조 제 1 항 제 18 호 • 전기사업법 제 49 조 • 동법시행령 제 22 조 제 1 항 제 17 호 • 전기사업법 제 49 조 • 동법시행령 제 22 조 제 1 항 제 17 호 • 전기사업법 제 73 조 제 2 항 • 동법시행령 제 22 조 제 1 항 제 21 호 • 전기사업법 제 74 조 제 2 항 및 제 3 항 • 동법시행령 제 22 조 제 1 항 제 13 호	구 정 장  “ “ “ “ “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사.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공 작물 기술기준 적합 명령  인.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 선임(해임) 신고  자.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 자의 보안규정제출 및 변 경 보고	· 전기사업법 제 37조 · 동법시행령 제 22조 제 1항 제 13호 · 전기사업법 제 40조 제 2항 및 제 49조 제 2항 및 제 3항 · 동법시행령 제 22조 제 1항, 제 17호 · 전기사업법 제 51조 제 3항 · 동법시행령 제 22조 제 1항 제 19호	구 청 장
별표 산업경제국증 "제 30호"를 삭제하고 "제 51호" 및 "제 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산 업 경 제국	51. 일반용 전기공작물의 유지 명령  52. 전기사업의 준용사업	· 전기사업법 제 44조 제 2항 · 동법시행령 제 22조 제 1항 제 15호 · 전기사업법 제 71조 · 동법시행령 제 22조 제 1항 제 20호	구 청 장
별표 도시계획국증 "제 8호" 및 "제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명 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국	8.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 승 인(비행정청) (아래 업무에 한함. 다만, 도로중 본청에서 직접 시행 하는 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법 제 24조 · 동법시행령 제 6조 제 1항 제 1호 "마" 및 (4)	구 청 장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립 기 관
	가. 도로(폭 30 m이상의 도로 제외) 나. 광장(폭 30 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교통광장 제외) 다. 폭 12 m 미만의 하천(2개구이상 연결노선 제외) 라. 하수도(종말처리장 제외) 마. 학교(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대학제외) 바. 소매시장 사. 단일종류의 운동장 아. 30만평 미만의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자. 주차장 및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차. 공용의 청사중 지역 단위 청사 카. 사망설비, 치수지, 공동묘지, 공공공지, 유원지 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문화시설, 종합의료시설, 시내버스정류장 9.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및 준공	도시계획법 제4조	구청장
발표 건설관리국중 "제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 번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립 기 관
건설관리국	11.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감독	주택건설촉진법 제 50조 공동주택관리령 제 25조 제 3 호	구청장



구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일 기관
상하수국	7. 비관리장 지형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다만, 한강관리사업소 관할업무는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 관련사항에 한함.	· 하수도법 제 13 조	· 수질장 및 · 한강관리 · 사업소장
	8. 공공하수도 수선유지명명. 다만, 한강관리사업소 관할업무는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 관련사항에 한함.	· 하수도법 제 14 조	
	9. 공공하수도 배관작성 및 보관. 다만, 한강관리사업소 관할업무는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 관련사항에 한함.	· 하수도법 제 19 조	
	10. 공공하수도 정용허가. 다만, 한강관리사업소 관할업무는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 관련사항에 한함.	· 하수도법 제 20 조	
	12. 타인 토지에의 출입등. 다만, 한강관리사업소 관할업무는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 관련사항에 한함.	· 하수도법 제 23 조	
	14. 재해시설 설치 명명. 다만, 한강관리사업소 관할업무는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 관련사항에 한함.	· 하수도법 제 26 조	
	15. 배수시설 및 재해시설 검사. 다만, 한강관리사업소 관할업무는 한강본류상의 차집관거 관련사항에 한함.	· 하수도법 제 27 조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17. 위반의 감독, 허가취소 처 분등. 다만, 한강관리사업소 관할업무는 한강본류상의 차 집관거 관련사항에 한함.	· 하수도법 제 37 조	구청장및 한강관리 사업소장
<p>별표 상하수국 “제 18 호”, “제 21 호” “제 24 호” 및 “제 25 호”와 “제 28 호” 내지 “제 30 호” 및 “제 32 호”중 “구 청장 허가사항에 한함”을 “소관허가 사항에 한함”으로 하고 제 22 호” 중 “( 구청장허가사항에한함)”을 삭제한다. 별표 상하수국 “제 27 호”중 “시장, 구청장, 시행공사에 한함”을 “시장, 구 청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시행공사에 한 함”으로 하고 “제 18 호”와 “제 20 호”내지 “제 33 호”중 수입기관의 “구청 장”을 “구청장및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상하수국중 “제 44 호” 및 “제 4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상하수국	44. 방류수의 수질검사	· 하수도법 제 16 조	한강관리 사업소장
상하수국	45. 중말처리장 유지관리	· 하수도법 제 17 조	
<p>별표 교통국중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교통국	1. 노외주차장 설치, 관리및 법 령위반등에 대한 처분등 가.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및 신고등 나. 노외주차장 관리 규정 승 인및 공용중치등서 신고 다. 보고및 검사와 과징금및 과태료 처분, 권리의무 이전등	· 주차장법 제 12 조 및 제 19 조 · 주차장법 제 15 조 및 제 16 조 · 주차장법 제 24 조, 제 24 조의 2조, 제 25 조 와 제 26 조및 제 30 조	구청장및 한강관리 사업소장



별표 교통국 중 "제 17 호" 및 "제 18 호" "제 10 호" 로 하고 "제 17 호" 내지 "제 20 호" 를 각각 울림려준비단 "제 9 호" 및 "제 10 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교통국	17. 화물취급소 설치 및 이 전 허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3 조	구 청 자
	18. 자가용 자동차 (버스) 유 상 운송 허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8 조	.
	19. 자가용 자동차 ( 화물 자동차 ) 유 상 운송 허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8 조	가 동 차 관 리 사 업 소 장
	20. 자가용 자동차 ( 버스 ) 공 동 사 용 허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7 조	구 청 장

별표 소방본부중 "제 4 호" 내지 "제 6 호"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시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공사업 수행시, 과세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12.

서울특별시장 임 보 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127 호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 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국가 또는 시

운출변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수권으로 인하여 토지 및 건축물 (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후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면제대상 ) 서울특별시의 시민이 파트정리사업, 시민공원 조성사업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 보상을 받고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권 (입주권, 분양권등 부동산구입권)을 최초로 인정받은자가 당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채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배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제 3 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면제신청등)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

세 면제할 수 있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 대채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훈 령**

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6.12.18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p>◎서울특별시훈령제 643 호</p> <p>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p> <p>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보건사회국중 "제 1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보건사회국	15. 적출물 및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등 지도감독	· 의료법 제 17 조 · 적출물등 처리규칙 제 3 조 및 제 9 조	구청장
<p>별표 1. 산업경제국중 "제 40 호"를 삭제하고 "제 2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산업경제국	22. 상품권의 규제 ( 2 개 구이상에 걸쳐 유통되는 것과 상환장소가 2 개소 이상은 제외 )	· 상품권법 제 1 조의 2, 제 1 조의 3 및 제 11 조	구청장
<p>별표 1. 산업경제국중 "제 65 호" 내지 "제 67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산업경제국	65. 내수면어업 (종묘채포) 허가처분등	·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 8 조 제 1 항 · 수산업법 제 20 조 제 1 항	한강관리 사업소장
	66. 내수면어업 (자망, 무망주낙등) 허가처분등	·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제 2 호, 제 4 호, 내지 제 7 호 · 수산업법 제 20 조 제 1 항	
	67. 실지력이 채포어업허가처분등	·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 8 조 제 2 항 · 수산업법 제 20 조 제 1 항	

별표 1. 도시계획국중 “제 1호”를 삭제하고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시계획국	7. 도시계획사업의 적격 인가(제 5호에 규정된 도시계획시설. 간, 도로 중 본청에서 직접사업 하는 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법 제 25 조	구청장

별표 1. 건설관리국중 “제 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건설관리국	31. 공동주택의 관리	· 주택건설촉진법 제 38 조 및 제 48 조	구청장

별표 1. 환경녹지국중 “제 17호”중 수입기관의 “구청장”을 “구청장 및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제 49호”, “제 51호” 및 “제 52호” 중 수입기관의 “구청장”을 “구청장 및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하며 “제 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경녹지국	57. 소음규제 지역내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 환경보건법 제 35 조	구청장

별표 1. 상하수국 “제 10호”중 수입기관의 “구청장”을 “구청장 및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제 11호” 및 “제 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경녹지국	11. 제방의 유지관리	· 하천법 제 11조 및 제 16조	구청장 및 한강관리사업소장
	12. 하천의 유지관리	· 하천법 제 11조 및 제 16조	“ ”

별표 1 교통국중 “제 27호” 및 “제 60호”를 삭제하고 “제 30호”중 수입기관의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 43호”중 수입기관의 “구청장”을 “자동차관리사업소장”으로 하며 “제 59호”를 늘린 피준비단중 “제 3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공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 51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체지정취소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3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  
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업체를  
지정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한  
다.

1986.12.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다 음

지정번호	종 윌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 반 사 유	은 처 내 용
69	2 종	88설비공사	홍제동 330-71	한상문	무관선정	지정취소

**사 령**

◎ 1986 년 12 월 22 일 자

발령제 192 호

성 명	발 령 사 항	원 부 서	직 급
최 용 순	서울특별시 전인물 명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40 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주사보" 에 강입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경북 울진군	지방행정주사

◎ 1986 년 12 월 7 일 자

발령제 493 호

성 명	발 령 사 항	원 부 서	직 급
정 세 택	정부합동민원실 파견 ( '86.12.7 - '87.6.6 )	내 무 국	지방행정주사
정 현 진	" ( " )	"	지방전속기사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 1986년 12월 16일자 명제 494호				
김일철	원어의하여	그직을 면함	새마을지도과	지방행정주사보
◎ 1986년 12월 15일자 명제 495호				
최성태	부직을 명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	건축지도과	지방건축기사보
◎ 1986년 12월 17일자 명제 496호				
박노윤	대법원판결(86누601호 '86.11.25)에 따라 '85.4.29자 해임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총로구	지방건축기원
서울특별시장				